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농 업 협 동 조 합 의 구 조 개 선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도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15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도록 개정(「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됨에 따라 신용사업 보험료 계산식 상 용어를 변경하고 문구 삭제 등 자구수정함

- 1) 보험료의 계산식 상에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납입보험료 계산 시에 펀드예탁금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 개정)
- 2) 조합의 펀드사업은 농협법 제5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용사업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보험료 계산식 상에서 ‘신용사업의’ 문구 삭제(안 제6조제2항 개정)

- 3)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현행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5.2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예탁금’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됨에 따라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문구를 삭제(안 제8조제1항 개정)

나.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15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실사’를 ‘실제 조사’로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수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상 용어와 일치함

- 1)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법 개정됨에 따라 ‘실사’를 ‘실제 조사’로 자구 수정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3항 개정)
- 2) 사전적 의미에 맞게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 수정함(안 제4조 개정)

다. 조제목을 본문의 의미에 맞게 현행 ‘예금등의 범위’에서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구수정하고(안 제2조 개정), 타법률 법제명 변경(「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6 3호)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개정)

3. 관련예상쟁점

가. 관계부처 입장 : 해당 없음

나. 관련 단체 등 입장 : 해당 없음

다. 쟁점 대응방안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안)

- 1) 개정안 확정 : '20.7월
- 2) 관계부처 협의 : '20.7월
- 3) 입법예고 : '20.8~9월
- 4) 법제처 제출 : '20.10월
-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20.11월
- 6) 공포 : '20.11월

나. 관련규제 검토사항 : 해당 없음

다. 재정수반 여부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개정령안, 별첨
- 2)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농업정책국장	김정희	044-201-1701	010-4177-3090	kimjh@korea.kr
농업금융정책과장	서준한	044-201-1751	010-4403-9706	junhans@korea.kr
담당사무관	임지현	044-201-1754	010-6214-1911	lim7072@korea.kr

대통령령 제 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제목 “예금등의 범위”를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용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용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에 대해서만”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3항 중 “실사”를 “실제 조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예금등의 범위) (생략)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최대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최대채권자) ----- ----- ----- ----- ----- ----- -----운용-----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 ----- -----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u>신용사업의 보험료</u> = 매 분기 말 <u>예금 및 적금</u>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u>신용사업의 보 험료</u>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 ④ (생략)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 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 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u>신용 사업에 대해서만</u>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 -----. <u>보험료</u> ----- --<u>예금등</u>----- ----- ----- ② -----<u>보험료</u>----- ----- -----. ③ ~ ④ (생략)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 ----- ----- ----- ----- ----- ----- ----- ----- ----- ---<u>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u>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

1. (생략)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 <u>실사</u>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3. ~ 7. (생략) ② (생략) ③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 <u>실사</u>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실제 조사</u>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실제 조사</u>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1754